# 제7장 근로환경과 업무상 재해

#### 1.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

- "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, <u>피용자가 신의칙</u> 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, <u>사</u> 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</u> 외에도 피용자 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 는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고 <u>피용자의 생명, 건강,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</u> 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 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" 대법원 95다39533 판결

#### 2. 업무상 재해에 관한 구제

### (1) 업무상 재해의 특성과 재해보상 제도의 성립

- 과실책임주의 → 무과실책임론 대두 → 업무상재해보상 제도 입법 → 사회보험방식의 재해보험으로 발전
- 현행법상, 업무상 재해 보상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 이루어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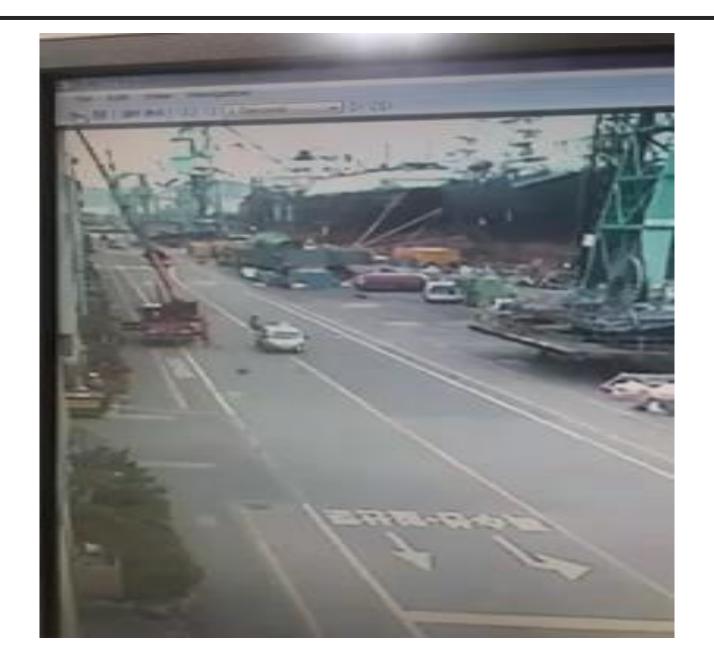
### (2) 업무상 재해

근로자가 아래의 사유로 부상,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**업무상의 재해**로 본다. 다만 **업무와 재해 사이에**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- 업무상 사고
- 업무상 질병
- 출퇴근 재해

#### ■ 업무상 사고

- 1)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2)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
- 3)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
- 4)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 비 중에 발생한 사고
- 5)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 한 사고







- 업무상 질병: 업무에 기인하는 질병
- 1)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,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<u>근로자의 **건강에 장해를 일** 으**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**하거나 그에 **노출**되어 발생한 질병</u>
- 2) <u>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</u> <u>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</u>
- 3)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
- 출퇴근 재해
- 1) <u>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</u>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 생한 사고
- 2) <u>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</u>하는 중 발생 한 사고

- 출퇴근 재해
- 2018년 이전 이후 적용 대상, 범위, 내용이 달라짐
- \* 종전
- 회사제공 교통수단 외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.
- \* 현재
- **교통수단 불문**하고 **통상적 출퇴근 경로**라면 인정
- <u>통상적 출퇴근 경로가 **단절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**</u>
- → <u>주거의 경계 내외 여부/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 여부에 따</u>라 <u>만단</u>

#### ■ 출퇴근 재해

- 모호한 법률규정으로 단정적 판단이 어려움
- 통상적 출퇴근 경로 판단의 예외사유
- →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, 자녀 어린이집 배웅, 투표 권 행사,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유로 한 경로 이탈은 예외로 봄
- 1) 본인 자동차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
- 2) 늦잠을 자다 1시간이나 지각해서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 에서 다친 경우
- 3) 퇴근 길에 회사 동료와 술집에서 술마시다 다친 경우
- 4) 출근 전,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사고
- 5) 퇴근 길 마트에 들러 식료품 구입 후 가던 중 사고
- 6) 퇴근 길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구입 후 가던 중 사고



### (3) 업무상 재해의 판단

판례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**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**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하여,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보고 있음

### (3) 업무상 재해의 판단

### 1) 업무수행성 관련

- 현실적 업무수행,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
- 다음날 작업준비 위한 도구 운반, 노조전임자의 노조업무
- 사용자의 지배아래에 있지만 업무 하지 않은 경우
- 회사 주최 공식 야유회, 운동회, 회식 등
- 사용자의 지배아래 있지만 관리를 떠난 경우
- 사업장 외 근로, 출장, 회사의 수습교육 일정에 따라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



### 2) 업무기인성 관련

- **업무수행과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**가 있어야 함.
- 판례는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, <u>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</u>, 또 <u>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러한 재해는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</u>에 인과관계를 인정

- 2) 업무기인성 관련
- <u>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</u>
- → 법률규정: <u>근로자의 고의,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, 질병, 장해 또는 사망</u>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부상, 질병,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→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한 행위
- 철도기관사의 자살
- 폭언 들은 상담사의 자살
- 업무상 스트레스





### (4) 재해보상의 내용

- 1) 요양급여: 요양기간 4일 이상시 지급
- 2) 휴업급여: 요양으로 미취업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70%
- 3) 상병보상연금: 요양급여 받던 자가 2년 후에도 치유 X
- 4) 장해급여: 업무상 재해 치유 후 장해가 남는 경우
- 5) 장해특별급여: 치유 후 장해 정도와 등급에 따라...
- 6) 직업재활급여: 장해급여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
- 7) 간병급여: 치유와 간병에 필요한 비용
- 8) 유족급여: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
- 9) 장의비: 평균임금 120일분
- 10)유족특별급여: 유족급여에 추가 지급

### <요약>

- 1. 근로자가 ㅇㅇㅇ재해를 당한 경우,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- 2. 근로자가 재해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으려면, 그 재해와 ㅇㅇ 사이에 ㅇㅇㅇㅇㅇ가이 있어야 한다.
- 3. 판례는 산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, ㅇㅇㅇㅇㅇ과 ㅇㅇㅇ ㅇㅇ측면에서 판단한다.
- 4. 출퇴근 재해는 ㅇㅇㅇ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.
- 5. 자해행위로 입은 부상, 사망 등은 ㅇㅇㅇㅇㅇㅇ에 의 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.